

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양봉
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 월 9 일

여 수 시 장

2023.5.9



여수시 조례 제1892호

붙임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여수시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양봉산업”이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양봉농가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.
3. “밀원식물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여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꿀벌 사육·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
3.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
4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
5.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

6.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 등)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·보급 사업
2.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·향상을 위한 연구·개발사업
3.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
4.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
5. 꿀벌 및 양봉 산물·부산물의 유통·판매사업
6.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
7. 꿀벌의 병·해충 방제 사업
8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

9.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홍보)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단체 육성 등)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, 경영지도 등 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시장은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,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